[개정대비표]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|---|---|--------------|
| 제1조 약관의 적용 e-플러스 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 | 제1조 약관의 적용 "하나 플러스 통장"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본 특약을 적용하고, 본 특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 | 상품명변경 |
| | 제2조 상품의 가입 ① 이 예금은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거나,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② 하나은행은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제휴사는 "간편결제 제휴사"(공동마케팅을 위해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법인을 "간편결제 제휴사"라 한다)를 포함합니다. | 조 추가 가입방법 |
| | 제3조 상품명 ①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거나, 제8조의 방법으로 거래 하기 위하여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하는 상품명은 "하나 플러스통장"으로 합니다 ②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하여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품명 중 "플러스"는 생략할 수 있으며, "하나(제휴사명)통장" 등의 상품명으로 협약한 제휴사명 또는 제휴사에서 요청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| 조 추가 상품명 |
|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 | 제4조 예금과목 좌동 | 조 변경 |
| 제3조 가입대상 및 제한 | 제5조 가입대상 및 제한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, | 조 변경 |

|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 | 제휴사별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| 제휴사내용추가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 이자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과목의 개별상품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. | 제6조 이자율 적용 ① 이 예금의 이자율은 예금 보유일 현재 영업점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금과 목의 개별상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 여 적용합니다. ②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시 하나 플러스 통장의 우대 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③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영업점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 | 조 변경 우대금리내용 내용 변경 |
| 제5조 가입 및 전환 방법 이 예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. ②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.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포함), 콜센터를 이용하여 이 예금으로 전환 | 제7조 가입 및 전환 방법 ① 이 예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가. 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. 나. 제휴사 애플리케이션 등에 연계된하나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. 다. 영업점에서 예금주 요청에 따른 신규가입 ② 통장을 발급하는 다른 예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"하나플러스 통장"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. 가. 영업점에서 예금주 요청에 따른 전환 나. 예금주가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| 조항 변경 가입과 전환 방법 제휴채널 추가 및 내용 정비 |
| 제6조 거래방법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거래방법은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,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. | 제8조 거래방법 이 예금의 거래 방법은 인터넷뱅킹(스마트폰 뱅킹 포함),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. | 조항 변경 비대면 전용 상품 삭제 |
| 제7조 통장발급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, 전환된 | 제9조 통장발급 좌동. | 조항 변경 |

| 계좌는 이전의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| | |
| ②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| | |
|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| | |
| 통장을 발급합니다. | | |
| | 제10조 제휴사 이벤트 | 조 추가 |
| | 제휴사별 별도 이벤트가 시행될 경우, 해당 이벤트 내용을 | 이벤트내용 |
| | 제2조에서 협약을 체결한 제휴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| |
| | 게시합니다. | |
| 제8조 우대금리 | | 제6조로 통합 |
| 이 예금은 신규 또는 전환시 고시된 우대금리를 | | |
| 개별상품의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| | |
| 단,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| | |
|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e-플러스 | | |
| 통장으로 전환 시 e-플러스 | | |
| 통장의 우대 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| | |
|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| | |
| 제9조 우대금리 변경 | | 제6조로 통합 |
|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은행이 사정에 따라 | | |
|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| | |
| 변경 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| | |
|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| | |
| | | |